

비과세 사업소득(농어가부업 · 어로어업소득) 계산 명세서

(앞쪽)

❶ 성 명		❷ 생년월일		
❸ 농어가부업				
❶ 구 분	❷ 사업자등록번호	❸ 수입금액 (상단 : 비과세금액)	❹ 소득금액 (상단 : 비과세금액)	❺ 업 종
❹ 축 산		()	()	
❺ 양 어		()	()	
❻ 고 공 품 제 조		()	()	
❼ 면 세 분 기 타		()	()	
❽ 민 박		()	()	
❾ 음 식 물 판 매		()	()	
❿ 특 산 물 제 조		()	()	
⓫ 전 통 차 제 조		()	()	
⓬ 과 세 분 기 타		()	()	
농어가부업 합 계	⓭ 합 계			
	⓮ 비 과 세 금 액		30,000,000	
	⓯ 과 세 대 상 금 액 (㉕-㉖)			
❹ 어로어업				
❶ 구 분	❷ 사업자등록번호	❸ 수입금액 (상단 : 비과세금액)	❹ 소득금액 (상단 : 비과세금액)	❺ 업 종
❹ 어 로		()	()	
어로어업 합 계	⓭ 합 계			
	⓮ 비 과 세 금 액		50,000,000	
	⓯ 과 세 대 상 금 액 (㉕-㉖)			

*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, 소득금액이 3천만원(어로어업은 5천만원)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.

예) • 민박의 소득금액 : 10,000,000원,

• 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,000,000원(수입금액 220,000,000원)인 경우

- "㉕특산물제조"란의 소득금액은 22,000,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,000,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,000,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, 나머지 2,000,000원만 과세됩니다.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$220,000,000 \times (2,000,000/22,000,000) = 20,000,000$ 원이 됩니다.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~ 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자와 ㉓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.
2. ⑥ 축산, ⑦양어, ⑧고공품제조, ⑨ 면세분 기타, ㉓어로 란은 농어가부업 및 어로어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.
3. ⑩ 민박, ⑪ 음식물판매, ⑫ 특산물제조, ⑬ 전통차제조, ⑭ 과세분 기타 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.
4. "⑥ 축산"란의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(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)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아니하며,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.

*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

가축별	규모	비고	가축별	규모
젖 소	50마리	1.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,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.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	토 끼	5,000마리
소	50마리		닭	15,000마리
돼 지	700마리		오 리	15,000마리
산 양	300마리		양봉	100군
면 양	300마리			

5. "⑩ 비과세금액"란의 "③ 수입금액"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, "㉓비과세금액"란의 "㉔수입금액"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6. "⑪ 과세대상금액"란의 "③ 수입금액" 및 "④ 소득금액"은 ⑮ 합계액에서 ⑩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
7. "㉓ 과세대상금액"란의 "㉔ 수입금액" 및 "㉕ 소득금액"은 ㉔ 합계액에서 ㉓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
8.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.
9. "③수입금액"·"㉔수입금액"란 및 "④소득금액"·"㉕소득금액"란의 상단 "()"에는 각각 농어가부업소득 및 어로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으며, 하단에는 해당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0. ⑥ ~ ⑭ 및 ㉓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기장자
 - *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(수입금액 - 필요경비)을 적습니다.
 - 기준경비율대상자
 - *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매입비용 + 임차료 + 인건비) - (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)
 -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
 - *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

축산업 사업소득(농어가부업소득) 계산 명세서

성 명		사업자등록번호		
구 분	가축종류()	가축종류()	가축종류()	계
월평균 사육두수 의 계산	1월			
	2월			
	3월			
	4월			
	5월			
	6월			
	7월			
	8월			
	9월			
	10월			
	11월			
	12월			
	계			
	월평균			
비과세 기준 사육두수				
기준초과 사육두수				
총수입금액				
기준 초과분	수입금액			
	필요경비			
	소득금액			

작성 방법

-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,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.

*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

가축별	규모	비고	가축별	규모
젖 소	50마리	1.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,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	토 끼	5,000마리
소	50마리		닭	15,000마리
돼 지	700마리		오 리	15,000마리
산 양	300마리		양봉	100군
면 양	300마리			
		2.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		

-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,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